

## 규정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규정

문서번호	TWP-C110		
제정일자	2012. 07. 27.		
개정일자	2023. 02. 28.		
개정번호 3	페이지 1/4		

## 목 차

제1장 총칙
제2장 조직 및 사업
제3장 현장실습운영위원회
제4장 재정
부칙

작성부서	현장실습지원센터	제정일자	2012. 07. 27.
, , ,		, , , , ,	

구 분	작 성	검 토		승 인	
직 책	담 당	현장실습지원센터장	교무학생처장	기획예산처장	총 장
서 명					
일 자					



# 규정

### 문서번호 TWP-C110 제정일자 2012. 07. 27. 개정일자 2023. 02. 28. 개정번호 3 페이지 2/4

##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규정

		2 2 2 3		
	개정이력			
개정 번호	개정일자	개정내용		
0	2012. 07. 27.	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정		
1	2015. 04. 27.	학칙 제56조 2에 의거 학과를 전공으로, 학과장을 주임교수로 변경		
2	2018. 02. 28.	<ol> <li>규정의 명칭, 센터장 임명 및 업무 문구 수정(제1조,제3조,제4조)</li> <li>위원회 구성 및 기능 문구 수정(안 제6조, 제7조)</li> <li>현장실습 운영 경비 관련 문구 수정 (안 제8조, 제9조)</li> <li>제10조(운영 세칙) 조문 삭제 (안 제10조)</li> </ol>		
3	2023. 02. 28.	1.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목적 변경 2.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기능 구체화		



# 

문서번.	<u>ই</u>	TWP	-C110
제정일:	자	2012.	07. 27.
개정일:	자		02. 28.
개정번호	3	페이지	3/4

##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규정

##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명칭)**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(이하 "이 대학교"라 한다)의 현장실습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 운영규정이라 칭한다. <전문개정 2018.02.28., 2023.02.28.>

제2조(목적) 교육부 고시 제2021-19호 『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』에 의거, 현장실습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 <전문개정 2023.02.28.>

#### 제2장 조직 및 사업

제3조(구성) ① 센터는 현장실습지원센터장(이하 '센터장'이라 한다)과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.

- ②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며, 센터를 대표하여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18.02.28.>
  - ③ 행정직원은 총장이 임명하며, 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업무를 담당한다.

**제4조(직무)** 센터는 현장실습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한다. <개정 2018.02.28.>

- 1. 현장실습 운영 모델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2. 현장실습 운영 시기 및 기간의 다양화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3. 현장실습 운영 형태의 다양화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4. 현장 실무형 현장연수제도 모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#### 제3장 현장실습운영위원회

제5조(위원회 설치)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운 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
제6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센터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- ③ 당연직 위원은 산학협력 중점교수 2명이며, 추천직 위원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단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8.02.28.>



#### 문서번호 TWP-C110 규정 2012. 07. 27. 제정일자 개정일자 2023. 02. 28. 개정번호 3 페이지 4/4

##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규정

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센터 행정직원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7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평가한다. <개정 2023.02.28.>

- 1. 현장실습에 운영에 필요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- 2. 학과(전공) 및 학부 별 현장실습 배정 및 조정·운영에 관한 사항 <개정 2018.02.28.>
- 3. 이 대학교의 현장실습과 관련된 운영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<개정 2018.02.28.>
- 4. 현장실습 활성화 및 현장실습 교육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5.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<신설 2023.02.28.>

#### 제4장 재 정

제8조(수입) ①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- 1. 이 대학교 지원금
- 2. 국가 및 공공기관의 지원금
- 3. 기타 수입금

제9조(지출) 센터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장실습비 등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 출할 수 있다. <개정 2018.02.28.>

제10조(운영세칙) <삭제 2018.02.28.>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